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라 함은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예정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예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예정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명 칭
2. 지정목적
3. 위치 및 범위
4. 지정일자
5. 면 적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합되어야 한다.

1. 신공항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가. 부지조성계획

나. 공항시설 배치계획

다. 교통시설계획

라. 통신·전력시설계획

마. 토지이용계획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건설기간

4. 재정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나. 자원조달계획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적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기본구상도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2.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④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1월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⑤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정지역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증감

2. 계획의 변경, 조정등에 따른 건설사업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증감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및 정산에 의한 건설사업비의 증감

4. 2년의 범위내에서의 건설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5. 지형 또는 지질등으로 인한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6. 예산사정에 의한 계획의 부분적인 조정

7. 기타 도서의 경미한 기재 착오의 정정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행위등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안에서 관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자갈(모래포함)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축목의 벌채 및 식재

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의 수면이하로의 굴착
  6.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7.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공유수면에의 주수
  8. 공유수면에서 토석이나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의 재배 또는 채별
  9. 공유수면에서 어획을 목적으로 어구를 설치하거나 수산물의 양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10. 제5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11. 기타 신공항건설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예정지역안에서 관계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경작지내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3. 단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농림,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6조 (건설사업의 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의 목적과 사유 및 사업내용
4. 사업시행기간
5. 자금조달계획
6. 사업시행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5. 사업시행방법
6.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비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7.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8.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9. 조성된 토지 및 건설된 공항시설물등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 계획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 사업의 장소와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서류의 공시송달의 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제8조 (선수금)**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시기, 면적, 위치, 토지의 상태 및 이용관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채권”이라 한다)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정부투자기관인 사업시행자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의 명칭, 매각기간 및 제12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사는 신공항건설사업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시공자가 원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채권의 형식) 토지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11조(토지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황등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제12조 (토지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채권의 발행계획(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토지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토지채권의 이율
5. 상환절차, 방법 및 시기
6. 상환대상지역, 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7.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8. 토지채권의 발행가액
9. 분납발행인 때는 분납금액과 시기
10.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11.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 (토지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토지채권의 번호
3. 토지채권의 발행년월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토지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채권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토지채권 원부를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채권의 수와 번호
2. 토지채권의 발행년월일
3. 제1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5. 토지채권의 취득년월일

제15조 (토지채권의 이전등) ① 토지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채권 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토지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를 토지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채권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토지채권 발행자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18조** (토지매수 업무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장은 91. 6. 14. 12시 이후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施行令(案)立法豫告

DL00-9106090

○ 交通部는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施行令(案)을 마련하여 1991. 6. 15. 立法豫告하고 關係部處 協議에 들어갔다.

○ 制定趣旨

●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首都圈 航空需要에 대비하기 위한 首都圈 新空港建設促進을 目的으로 하는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이 지난 제154회 臨時國會를 통과, 법률 제4383호로 制定·公布되었는바 ('91. 5. 31), 이법에는 首都圈新空港建設에 관한 각종 계획의 樹立·告示, 關係法律에 의하여 거쳐야 하는 각종 認·許可 등의 行政節次의 簡素化, 土地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과 首都圈新空港建設事業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음

● 이같은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の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施行令을 制定하려는 것 이며 그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음

○ 主要骨子

● 交通部長官은 新空港建設事業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首都圈 新空港建設豫定地域으로 지정할 때에는 建設豫定地域내에 거주하는 주민등 新空港建設과 利害關係가 있는 국민에게 이를 告示토록 하였고(법제3조제3항), 告示해야 할 사항에는 豫定地域의 名稱, 指定目的, 位罨 및 範圍, 指定日字 및 面積등이 포함되도록 함

- ㉔ 또한 首都圈新空港建設 豫定地域內에 거주하는 住民, 關聯業體 및 利害關係있는 국민에게 首都圈新空港建設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財産과 權利的 變動에 대한 豫測이 가능하도록 首都圈新空港 基本計劃의 개요와 함께 新空港建設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收用 또는 使用하게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的 明細를 告示토록 하였으며 基本計劃과 關係圖面은 關係市·道知事에게 送부하여 1월이상 일반에게 閱覽시키도록 함
- ㉕ 首都圈新空港 建設豫定地域內的 建設立地 保全등을 위하여 建設豫定地域 지정이후 一定行爲(土地의 形質變更과 土石·자갈의 採取, 建築物를 新·改·増築하는 행위와, 公有水面의 浚渫·掘鑿, 土石과 자갈을 採取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採伐하는 행위 및 漁獲을 목적으로 漁具를 설치하거나 水産物의 養殖을 위한 施設物을 設置하는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關係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建設豫定地域 指定·告示당시 이미 關係法律에 의하여 許可받아 工事 또는 事業에 着手한자로서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자는 建設豫定地域의 指定·告示가 있는날로부터 3월이내에 關係市·道知事에게 이를 신고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므로써 建設工事に 지장이 없는 한 국민의 기득권이 보호되도록 하였음.
- ㉖ 종래의 空港建設事業은 政府만이 이를 행할수 있었으나 首都圈新空港建設事業에 소요되는 막대한 財源負擔을 덜고 國內航空社 및 航空貨物周旋業體들의 축적된 경험과 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들 항공관련 업체들도 新空港建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경우 新空港建設事業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姓名 및 住所, 事業施行의 目的과 內容, 事業施行期間, 資金調達計劃등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함.

● 首都圈新空港建設에 따르는 國家財政負擔은 이를 가급적 줄이고 상당부분의 所需財源을 자체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新空港建設事業施行者는 建設豫定地域內의 空峯水面埋立으로 조성되는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자에게 土地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先受金), 事業施行者가 이러한 先受金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造成된 土地의 供給時期, 面積, 位置, 土地의 狀態 및 利用關係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자와 미리 協議하도록 함.

● 政府投資機關인 事業施行者에게는 造成土地를 공급받을자에게 土地로 償還하는 債券(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同 土地償還債券의 형식은 記名式證券으로 하고 償還期間은 10년이내로 정함

- 또한 政府投資機關인 事業施行者가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자의 名稱, 發行總額, 利率, 償還節次 및 方法, 償還時期, 償還對象地域, 對象土地의 用途 및 買入對象者의 範圍, 土地價格의 推算方法등이 포함된 土地償還債券發行計劃을 작성하여 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고

- 土地償還債券을 移轉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取得者 또는 質權者의 姓名과 住所를 土地償還債券 원부에 기재하고, 그 姓名을 土地債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土地債券이 무분별하게 양도 또는 質權의 目的物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음

○ 向後 推進計劃

- 20일간의 立法豫告('91. 6. 15 - 7. 5)와 關係部處協議가 끝났는데본  
經濟長官會議, 法制處審議 및 國務會議 議決등 절차를 거쳐
-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시행예정일인 '91. 9. 1 이전에 同 施行  
令을 公布할 계획임